

코람코서초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약관변경

1) 변경 사유 : 수익자 요청에 따라 신탁계약기간을 기간을 12개월 연장

2) 변경 내용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	[제정 2010.7.30], 시행일 2010.7.30 [일부 개정 2013.1.30], 시행일 2013.1.30	[제정 2010.7.30], 시행일 2010.7.30 [일부 개정 2013.1.30], 시행일 2013.1.30 [일부 개정 2014.1.30], 시행일 2014.1.30	
제5조 제3항	제5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4개월간으로 한다. 다만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하며,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3.1.30>	제5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54개월간으로 한다(신탁계약기간 만료일 : 2015년 1월 30일). 다만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하며,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4.01.30>	수익자 요구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연장
부칙	-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1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신설 2014.01.30>	
집합 투자 업자	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-1 캐피탈타워 4층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김 영 덕	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김 영 덕	주소변경
신탁 업자	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충 식	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주 하	대표자 변경

3) 시행일 : 2014.01.30